

1. 개정(제정)이유
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신탁계약에 자산관리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의계약 요건 및 신고 폐지에 따른 수의계약 물량 신고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는 신탁계약에 자산관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항)
- 나. 수의계약 물량 신고 사항 폐지(제7조 삭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14. 7. ~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분양사업자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신탁계약에 제1항 제3호·제5호·제6호·제7호 및 자산관리·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(영)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대리사무계약의 내용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대리사무계약의 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분양사업자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3조 제5항에 따라 신탁계약에 제1항 제3호 · 제5호 · 제6호 · 제7호 및 자산관리 ·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</u> <u><삭 제></u>
제7조(수의계약 물량 신고 등)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<u>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및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</u> 2. <u>최초 분양신고할 때의 분양 물량</u> 3. <u>분양 신청 물량 및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물량</u> 4. <u>수의계약 방법 및 기간</u>	